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 
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#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11. 5.

발 의 자 : 유천호·윤지상·오흥철 의원  
(찬성자 5인)

## 제안이유

-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포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##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조제2항제5호)

##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 
신설한다.

5.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제4조(지원대상 및 용도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4조(지원대상 및 용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</li> <li>-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</li> <li>-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</li> <li>- 제47조(비용의 보조)</li> </ul> </li>  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4조(비용의 보조)</li> </ul> </li>  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</li> <li>- 제22조(조례)</li> </ul> </li> </ul>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취사항

## 【노인복지법】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**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8.3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노인휴양소 :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·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 【노인복지법 시행령】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4.7.30, 2007.12.13>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12.27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27>

## 【지방자치법】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- 다. 산하(산하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관리(공유재산관리)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 - 다. 생활이 곤궁(곤궁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부녀(부녀)의 보호와 복지증진
 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 - 바.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 - 사. 묘지·화장장(화장장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 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소류지(소유지)·보(보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- 사. 공유림 관리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개발사업
 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지방도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개수)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1급하천,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화재예방과 소방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